

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을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임(안 제13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화 실)